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81
- 나. 제 안 자: 신중갑 의원 외 7인
- 다. 제안일자: 2023년 5월 23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5월 25일(목)

2. 제안사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안 제4조)
- 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침(안 제5조)

- 마.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 바.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참여·지원(안 제8조 ~ 제9조)
- 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위탁(안 제10조)

4. 관계법령

-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16조
- 나. 「성별영향평가법」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라. 「지방회계법」 제18조

5. 검토보고

가. 제정 경위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5월 23일 신종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성인지 예산 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ing)¹⁾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등 성평등한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1) 성인지 예산제는 2010년부터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었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마포구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 마포구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44개 사업 121억 7,6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의 성인지 예산 편성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합 계		50	30,293	52	33,409	44	12,176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11	6,796	24	15,696	20	4,087
	일반회계	10	3,714	22	11,831	20	4,087
	특별회계	0	0	1	100	0	0
	기금	1	3,081	1	3,764	0	0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 계	37	23,202	26	17,418	21	6,197
	일반회계	37	23,202	16	17,418	21	6,197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2	295	2	295	3	1,892
	일반회계	2	295	2	295	3	1,892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바 사업부서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등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음. 이에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 및 기본지침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의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나.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양성평등의 목표설정부터 결산평가까지 성인지 예산 관련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제1항),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제2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특정 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 배분의 모든 과정임을 고려할 때 성인지 예산의 편성·집행부터 결산·환류에 이르는 모든 예산 과정에 제1항과 같이 구청장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²⁾
- 안 제4조 중점관리사업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마포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등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음.

2)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 지침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실무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정책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여 매년 필요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또한, 조례의 지침 마련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의 일괄적인 지침의 원칙 안에서 구의 실정에 맞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반을 아우르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지침 제작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7조까지는 성인지 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기능을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리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교육과정 운영)는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임.
- 안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안 제10조(사무의 위탁)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및 지침의 제작에 대한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음.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성인지 예산제의 전문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 결과

-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제도 정착을 위해 운영체계를 갖추고 예산 규모도 증가하여 왔으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사업부서의 이해도 부족, 현실과 맞지 않은 지표 설정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 사업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과 교육 운영 등의 방안을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실효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디지털재정과,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는 가족행복지원과,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가 연계되어 있는 바, 모든 소관 부서는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조례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3. 8.]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